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1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10.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04

플랜트

플랜트 정 보 공 개 서

(주)플랜트파트너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플랜트파트너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화번호 : 070-8866-6520 / 담당자 전화번호: (비공개)

가맹사업 담당부서 : 플랜트 가맹사업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홈페이지 : <http://www.plantstudyounge.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3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5

※ 별 첨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외 1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4.27	2020.04.29	김정우 김영식	070-8866-6520	-
	법인등록번호	110111-7469392	사업자등록번호	263-81-0159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정우/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외 1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우, 김영식	070-8866-6520	-
사내이사	김영식/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외 1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우, 김영식	070-8866-6520	-
계열회사, 대표이사	김정우/ (주)대일파트너스	메가샵크로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우	1666-6971	-
계열회사, 사내이사	최진현/ (주)대일파트너스	메가샵크로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우	1666-6971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플랜트	플랜트	2020.04.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35, 101호 2(연희동)	김정우 김영식 박재훈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플랜트	무인 스터디카페 전문 가맹사업
상 호	플랜트	무인 스터디카페 전문 가맹사업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영업표지		출원번호 : 4020170119333 (출원일자: 2017.09.19) 등록번호: 4013862240000 (등록일자: 2018.08.09.)

☞ 플랜트는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한 최첨단 무인 스터디카페입니다. 안전한 가맹점 창업을 위해 플랜트 임직원 모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34,707	69,399	765,307	4,282,039	244,951	282,532
2023년	1,588,593	605,878	982,714	2,084,759	273,097	255,407
2024년	1,594,854	598,046	996,808	882,698	14,093	14,093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정우	공동대표	2017.10.01.~ 2020.04.28	플랜트의 공동대표	가맹사업 총괄
	김영식	공동대표	2017.10.01.~ 2020.04.28	플랜트의 공동대표	가맹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정우	사내이사	2020.04.29.~ 현재	(주)플랜트 파트너스의 각자대표	가맹사업 총괄
	김영식	사내이사	2020.04.29.~ 현재	(주)플랜트 파트너스의 각자대표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7

당사의 직원 수 정보는 전년도 연말 12월분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직영점 직원 수 전체를 합산)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영업표지[플랜트] 가맹사업이외로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플랜트파트너스/ 김정우, 김영식	타 가맹사업 경영	2022.06.17~현재	독스마켓(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13133)이라는 영업표지의 반려동물 용품 가맹사업
가맹본부 임원	(주)대일파트너스/ 김정우, 최진현	타 가맹사업 경영	2021.10.09~현재	메가샵크로플(정보공개 등록번호:20211497)이라는 영업표지의 크로플 가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플랜트 (상표권)	당사 상표, 영업표지 대가 (43류)	출원일자: 2017.09.19 · 등록일자: 2018.08.09	출원번호: 4020170119333 · 등록번호: 4013862240000	소유자: (주)플랜트 파트너스	2028.08.09

당사의 지식재산권 ‘플랜트’는 2018.08.09. 특허청장을 통한 상표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플랜트’는 기존 가맹본부 임원 개인(김영식)으로 상표권리가 등록
등록되었으나, 이를 당사에서 안전하게 가맹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2021.05.04. 상표
권리를 당사로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플랜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 권리
는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Ⅱ. 가맹본부의 [플랜트] 가맹사업 현황

1. [플랜트] 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17년 11월 0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서울대역 직영점이 2018.02.15. 양도양수로 가맹점 전환)

2. [플랜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플랜트	플랜트	김영식	2017.11.03.~ 2018.01.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길 91, 지하 1층
플랜트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박재훈	2018.01.22.~ 2020.04.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8, 4층 402호(성수동2가)
(주)플랜트 스터디카페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2020.04.29.~ 2021.05.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35, 101호(연희동)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2021.05.07.~ 2022.05.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35, 101호(연희동)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2022.05.06.~ 2023.1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4, 2층(서교동)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2023.10.13.~ 2024.10.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7층 1호(연건동, 임호빌딩)
(주)플랜트 파트너스	플랜트	김정우 김영식	2024.10.23.~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4-1, 3층(동소문동5가)

3. [플랜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플랜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임대업	공간임대업(무인 스터디카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플랜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	-------------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2	122	-	114	114	-	105	105	-
서울	21	21	-	18	18	-	16	16	-
부산	9	9	-	9	9	-	8	8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4	4	-	4	4	-	4	4	-
광주	3	3	-	3	3	-	3	3	-
대전	5	5	-	5	5	-	5	5	-
울산	2	2	-	1	1	-	1	1	-
세종	-	-	-	1	1	-	1	1	-
경기	34	34	-	34	34	-	30	30	-
강원	9	9	-	9	9	-	9	9	-
충북	2	2	-	2	2	-	2	2	-
충남	3	3	-	3	3	-	3	3	-
전북	4	4	-	1	1	-	1	1	-
전남	2	2	-	2	2	-	2	2	-
경북	6	6	-	4	4	-	4	4	-
경남	14	14	-	13	13	-	12	12	-
제주	2	2	-	3	3	-	2	2	-

☞ 당사는 2017.11.03부터 가맹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진행 중 변동될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될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년간 [플랜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103	24	-	5	-	122
2023년	122	9	-	17	6	114
2024년	114	1	-	10	8	105

☞ 당사는 2017.11.03부터 가맹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진행 중 변동될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될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플랜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영업표지 [플랜트]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플랜트 파트너스/	반려동물 관련	독스마켓	20213133	8/-	5/-	5/-

	김정우, 김영식						
가맹본부 임원	(주)대일 파트너스/ 김정우, 최진현	기타 외식	메가샵크로폴	20211497	35/1	15/-	7/-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플랜트]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의 가맹사업 [플랜트]관련 2024.01.01.~2024.12.31.까지 총가맹점 수는 105곳입니다.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권장 기준인 실제 영업 개월 수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은 104곳입니다. 그러나 당사 가맹점 관리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가맹점별 매출 확인이 불가한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표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 자료는 105곳이 아닌 실제로는 50곳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이기에 실제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역별로도 가맹점 수 5곳 미만은 지역별 매출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당사의 [2024년]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자료는 가맹점별 POS상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 대상은 영업 개월 수 6개월 이상의 가맹점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 가능한 매장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관련 자료는 단순히 추정 자료임에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중 가맹점 면적(m²)은 전용 면적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할 자료는 당사의 당사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플랜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플랜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05	1,372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다만, 경영환경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36,826	36,826	해당 없음	-
광고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4.01.01.~ 2024.12.31	-	-	-	
	(비공개)		-	-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기업창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20	1577-8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신한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 (1577-800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플랜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등)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설비 및 집기 등 기타 비용	타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8,800	-	-	-	(예외조건)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 안됨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영업 개시 이전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 안됨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영업 개시 이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 보증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 계	8,800
가 맹 비	5,500
교 육 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126,500	2,530	-	-	165㎡ (구 50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미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88,000	1,760	가맹계약 시 개별 계약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건물 내부
매장 의탁자 등의 시설물	미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16,500	330	가맹계약 시 개별 계약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1좌석당 8만원 예상
무인 키오스크	(비공개)	11,000	220	가맹계약 시 개별 계약	미 공급 시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무인키오스크 1대 기준가격
※ 초기 가맹점 구성에(인테리어, 시설물, 키오스크 등) 관한 지급대상 협력업체가 연간 당사와 협력업체 사정으로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의 상담 또는 계약 시점에 정확한 지급대상 협력업체 정보를 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급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가 그 목적임을 밝힙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희망할 시에는 사전 당사의 대표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한 논의

가 필요하며 당사는 귀하의 자율적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의 인테리어 도면 등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당사에게 감리의 대가로 3.3㎡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공사착수 5일전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할 금액과는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정확한 금액과 해당 업체를 통한 견적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위 항목을 제외한 철거, 닥트, 전기증설, 상하수도 유입, 냉난방기, 폴딩도어, 파사드 등의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 ☞ 위의 모든 지급 금액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조건을 기준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 당사 점포개발팀(070-8866-6520)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이수	● 무인스터디카페 운영상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 무인스터디카페 운영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 적용 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종업원	없음	당사 가맹사업은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시스템 영업으로 종업원이 필요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플랜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지정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가 목적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절대적 강제사항은 아님으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귀하가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가 제시한 것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공급업체는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800만원 미만 시 고정 330 월 매출 800	매월 25일	-	-	정기납입경비(로열티)는 두 가지 조건 중 택일

		이상 시 매출액 대비 5%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상품광고 50%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50% 균등부담 판촉비 균등부담 SNS마케팅 100%	2주일이내	광고·판촉 미실시 시	-	광고비 통지 수령일로부터 2주일이내 세부 조건은 p.35 참조 가맹점 자체홍보 SNS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100%부담이며 가맹점 자체진행
추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 비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미실시	-	교육 필요시 지급
무인 키오스크	협력업체	매월 27	업체 기준	업체 기준	업체 기준	매월 ₩55,000원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협력업체 선정 중)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p.40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모든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 법정지연이자 기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

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플랜트] 관련 2024.01.01~2024.12.31까지 기준 가맹점은 총 105곳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공간 대여 서비스업 가맹사업으로 특정 물품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월 1회	문의 : 가맹사업팀 (070-8866-6520) ※ 관리·감독 방문의 기준은 월1회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장운영 점검	무인 시스템 점검과 매장운영 점검	월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월 1회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월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랜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기타 실행 경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 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로 가맹점내로 구성된 당사의 인테리어 콘셉트를 다른 형태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인테리어 콘셉트 변경 요소로는 가맹점내 색상, 조명, 시설 배치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변경 요소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반품 규정으로 당사는 반품 불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플랜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신제품 출시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2	-			-
3	-			-

☞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제4조 제1항 관련) 내용에 따라서 현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내용과 향후에도 수취할 계획이 없기에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 당사의 주된 수익구조는 개설수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 도입취지에 부합한 로열티 등으로만 운영될 예정이기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플랜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관련 내용 없음	2024년 기준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플랜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관련 내용 없음	-	2024년 기준

- (2) 당사가 [플랜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관련 내용 없음	-	2024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목록은 [별지#2]와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별지#2]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노력으로 기재된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환경 변동 등으로 상품·용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귀하와 협의할 것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2]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무인 스터디카페 가맹사업	플랜트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소재 주소지 기준 (반경 500m) 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플랜트]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플랜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관련 내용 없음
대리점	-	-	
일반소매점	-	-	
기타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관련 내용 없음
	-	-	-	
홈쇼핑	-	-	-	
전화권유판매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플랜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한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없을시 [1]년 단위 자동갱신으로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의 서비스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플랜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0조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4항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	----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70-8866-652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 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당사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는 없으나 필수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	-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 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 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 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플랜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업금지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일정부 분 적용되며 그 범위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1]년간 현 가맹점의 영업지역설정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업종의 경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무인 스터디카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070-8866-65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플랜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24시간 오토 영업)	365일 영업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365일 오토 영업)	문의: 가맹사업팀 (070-8866-65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0명 (무인 시스템으로 종업원 필요 없음, 다만 매장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도우미 운영은 해당 점포별 자율 운영 필요함)	직접 근무 필요 없음 (무인 시스템 매장으로 가맹점주 의 직접 근무 필요 없음,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한 주 기적 방문과 관리는 필요함)	165㎡(약50평)기준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시 관리 · 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 독 절 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가맹사업팀	문의: 가맹사업팀 (070-8866-6520) ※관리·감독 기준은 월1회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 가맹본부 지침사항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 및 재고, 상품관리, 당사 지침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가맹사업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플랜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상품광고	50%	광고비 50%, 균등비율로 부담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50%	광고비 50%, 균등비율로 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 음	-	가맹점 자체진행
	가맹점 개별광고 (SNS마케팅 등)	없 음	100%		
공동 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은 균등 부담 (이외는 협의)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2022년 07월 0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맹본부인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광고 100분의 50 /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1]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3조(영업비밀유지)와 제24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일금삼십만원(₩3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당사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해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며 그 입증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 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 원본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약 165 m ² (50 평) 기준/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4)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대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각종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공사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등 - 가맹점 운영 교육(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최소 소요 예상기간은 3주)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

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당사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 가맹 사업팀 (070-8866-6520)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플랜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플랜트]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당사의 경영환경 변동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 내용	비고
-	-	-	-	해당 없음	-

--	--	--	--	--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당사가 정한 곳에서 개업 전에 소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 [플랜트] 판매상품 및 점포운영 교육 등	실습교육 강 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 등	실습교육	필요 시	필요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플랜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교육시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3일 / 일일 6시간	3,300 (1인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 교육	3일 / 일일 6시간	3,300 (1인기준)	양수 이전 시 이수
보수 교육	필요 시간	실 비	필요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이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해당 없음(당사 법인명의 직영점 없음)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당사 법인명의 직영점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해당 없음(당사 법인명의 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70-8866-652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 | | |
|------------------------|------|
| 1. 가맹점운영 필수 공급 물품 리스트 | 별지-1 |
| 2. 판매상품 가격표(플랜트 요금 체계) | 별지-2 |
|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 별지-3 |
| 4.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 별지-4 |
| 5.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별지-5 |
| 6. 가맹본부 재무현황(매출정보) | 별지-6 |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물품 리스트

품목	거래 형태(강제/자율)	거래 상대방	비고
무인 키오스크	강제	(주)아이엔지스토리	-
-	-	-	-
-	-	-	-

◎ 통일적인 가맹사업 진행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사전 지정한 협력업체를 통하여 매장 내 설치할 물품의 품목 리스트입니다. 무인시스템을 핵심 가맹사업 기술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장 내 유사 설비와 기계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본부의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시: 2017.10.01~현재)

판매상품 가격표(플랜트 요금 체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판매상품 가격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제시됩니다. 그러나 가맹점의 지역적인 특성과 상권 등의 영향으로 다르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가격 정책을 임의로 설정 진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2017.10.01~)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플랜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플랜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별지 #6_1: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2: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3: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4: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5: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6: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7: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6_8: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2년/2023년/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